

[별표 2]

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(제5조관련)

1.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자격 필수
2. 필수 자격을 갖춘 특수구조대원들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 분	자격기준	비 고
화학구조대	• 인명구조사 1급 이상 자격취득자 • HAZMAT 등 관련분야 교육 2주 이상 •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•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	
수난구조대	• 인명구조사 1급 이상 자격취득자 • 수상구조사(수상구조법) 자격취득자 • 급류구조 등 수난관련 구조교육 2주 이상 • 잠수기능사 이상 • SCUBA 강사 이상	
산악구조대	• 인명구조사 1급 이상 자격취득자 • 특수항공구조 교육 2주 이상 • 산악구조과정 교육 2주 이상	
※ 관련 분야 교육 : <u>중앙 및 시·도에서 선발하여 해외 소방기관으로 위탁한 교육*</u>, 각 소방학교(교육대 포함)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 * IFSAC(International Fire Service Accreditation Congress) 및 Pro Board 등		